

(붙임2)

# 임금피크제 운영요령 제정(안)

제 정 2016.01.01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요령은 「인사규정」 제51조의 임금피크제 대상자, 직무, 보수 등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임금피크제에 관하여는 법령, 정관 또는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임금피크제 대상자”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에 도달한 직원을 말한다.
2. “피크임금”이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을 산정 기준임금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직전 1년간의 기본급을 말한다.

## 제2장 대상자 및 적용

**제4조(대상자)** 임금피크제 대상은 「직제규정」 제9조 제1항의 일반직원에 대해 적용한다. 다만, 향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직원을 확대할 수 있다.

**제5조(적용기준일)** 임금피크제는 「인사규정」 제47조에 따른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적용한다.

## 제3장 인사 및 직무

**제6조(인사발령)** 임금피크제 대상자 발생 시에는 제5조에 따른 적용기준일 이전에 별도 직군 전환을 위한 인사발령을 실시한다.

**제7조(직급 및 직위)** ①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기존에 부여받은 직급을 반납하고 직급을 별도직군(“임금피크제”)으로 구분하여 일반직 정원 내 현원으로 관리한다.

②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8조(직무부여)** ①이사장은 임금피크 대상자의 근무경력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한다.

②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 임금피크 기간 중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9조(호칭)** ①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호칭은 “부장”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4장 보수

**제10조(보수체계)** ①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는 기본연봉, 성과연봉, 제수당으로 구성한다.

②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

③성과연봉은 「경영성과평가성과급 지급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④제수당은 「보수지급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11조(기본급)** 기본급은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1년차 : 피크임금의 95%

2. 2년차 : 피크임금의 90%

3. 3년차 : 피크임금의 85%

**제12조(직무급)** ①직무급은 "별표"와 같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5장 퇴직금

**제13조(퇴직금 중간정산)** ①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에도 변경된 보수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.

## 제6장 기타

**제14조(별도정원관리)** ①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 남은 직원의 수만큼 별도정원이 생성되며,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인력을 별도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별도정원은 정년퇴직자 발생 시 소멸한다. 다만, 행정자치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**제15조(준용)**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 (제정)

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[별표]

###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급표

임금피크제 직전 직위	지급기준
지점장 이상	「보수지급기준」 제5조 “지점장” 직무급 <sup>주1)</sup> 의 90% 지급
팀장 이하	「보수지급기준」 제5조 “팀장” 직무급 <sup>주2)</sup> 의 90% 지급

주1)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지점장 직무급 중 최상위 금액으로 한다.

주2)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팀장이하 직무급 중 최상위 금액으로 한다.

